

## 1. 개정이유

「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(‘23.8.29)」에 따라,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, 기존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퍼센트 범위에서 2세 이하의 자녀(태아 포함)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공급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

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4항부터 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중 2세 이하 자녀(태아를 포함한다)가 있는 가구에게 해당 단지 총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공급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.

1. 출산의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), 아동수당·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2. 입양의 경우 :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, 아동수당·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3. 임신 중인 경우 :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

한다.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과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.

1. 출산의 경우 :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아동수당·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2. 입양의 경우 :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, 아동수당·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3.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: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

## 부 칙

이 훈령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3. 임신 중인 경우 :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「모자보건법」 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.

1. 출산의 경우 :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, 아동수당·부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출산과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2. 입양의 경우 :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, 아동수당·부

<신 설>

모급여 수령내역 등의 입양과  
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
3.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 
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  
지 지속되는 경우 : 공공주택사업  
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  
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